



## 2011년도 관세감면대상 공장자동화 물품



### 2011년도 관세감면대상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제2호 본문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하고,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품목은 “100분의 4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법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  
(제46조제2항 관련)연번관세율표

연번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호	소호		
46	8479	89	적재기 또는 분리기	적재기 또는 분리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6. 골판지 적재용으로서 폭이 1.8미터 이상이고, 최대 분당 250미터 이상의 속도로 생산되는 골판지를 적재할 수 있는 것
47	8442	30	결속기, 포장기 또는 튜빙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기저귀(팬츠형)을 포함한다, 생리대, 화장지, 키친타월 또는 미용지를 투입, 정렬, 포장, 실링(Sealing) 및 자동 취출(取出)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최대 포장능력이 분당 50백(Bag) 이상인 것 ㉡. 종이상자, 필름 또는 튜브를 이용하여 포장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분당 6케이스 이상이거나 분당 6번들 이상인 것 3. 롤 또는 시트상태의 종이제품 처리용으로서 투입·정렬·포장·실링 또는 테이핑 공정으로 구성되고, 자동 취출 기능이 있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최대 포장능력이 시간당 20롤 이상인 것 ㉡. 최대 포장능력이 분당 14롤 이상인 것 ㉢. 최대 포장능력이 분당 3팩 이상인 것
51	8441	10,80	절단기, 슬리터(Slitter), 파단분할기, 슬라이싱기, 와이어쏘우(Wire Saw) 또는 클래빙기(Cleaving)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알루미늄박, 알루미늄판, 종이, 필름, 부직포, 스테인리스 또는 판지를 절단한 후 트리밍 또는 권취할 수 있는 것 20. 골판지를 진행방향으로 자른 후 패션을 넣을 수 있는 것 26. 합지 또는 판지(종이)를 가로 및 세로로 절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절단 길이가 1천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절단정도가 ±0.2밀리미터 이하이고, 절단길이가 1천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절단정도가 ±0.05퍼센트 이하인 것
56	8439	20,30	골판지제조기 (Corrugator 또는 Corrugating machine)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편면골판지 또는 양면골판지 제조용으로서 최대 폭이 1.8미터 이상인 골판지를 제조할 수 있고,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25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2011년도 관세감면대상 공장자동화 물품

연번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호	소호		
61	8441	30	플렉소다이커터 (Flexo Die Cutter)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골판지상자 제조용인 것으로서 로터리타입은 금지면적이 2천400밀리미터×1천600밀리미터 이상이고, 평판타입은 금지면적이 1천600밀리미터×1천100밀리미터 이상이며, 인쇄기능이 있고, 최대 절단속도가 분당 100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62	8441 8443	30 91	플렉소폴더스티처 (Flexo Folder titcher) 또는 플렉소폴더글루어 (Flexo Folder Gluer)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골판지상자 제조 시 인쇄공정 및 봉합공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풀봉합 방식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200매 이상인 것 2. 철박음 방식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700회 이상인 것
62	8441 8443	30 91	골판지 웹(Web) 조절장치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골판지 웹의 장력 및 균형을 조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